

## 미국의 이란 추가제재 법안내용과 향후 전망

### 1. 개요

-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안(H.R. 2194, the Comprehensive Iran Sanctions, Accountability, and Divestment Act of 2010)이 2010년 6월 24일 미 의회 승인을 거쳐 2010년 7월 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음.
- 이번에 발효된 이란 제재법안은 이란에 정유와 정유제품을 판매하는 기업, 이란 혁명수비대 등 미국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관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음. 또한 미국 은행의 경우 해외 자회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제재 내용 및 강도가 지난 6월 채택된 UN 안보리 4차 제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됨.
- 이번 법안은 정유제품 관련 제재, 금융부문 제재 이외에도 미국 주·지방 정부의 자산이 이란 에너지 산업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투자된 경우 주·지방 정부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음.
- 또한 과거 미국 대통령의 면제 부여권 (waiver) 등으로 이란의 원유·가스산업에 U\$20백만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으나, 이번에 발효된 법안에서는 대통령의 면제권 부여에 대해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어 1996년 제정된 이란제재법(Iran Sanctions Act) 보다 확장·개선되었음.

- 즉, 이번 법안에서는 이란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위반한 기업들의 명단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,
- 아울러 대통령이 특정 기업에 대해 면제권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, 면제권 부여로 인해 미국 안보에 돌아오는 혜택과 타당한 이유에 대해 의회에 보고토록 명시하고, 면제기간도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.

## 2. 포괄적 이란 제재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

### 가. 제재법안의 구성

- 이란 제재법안은 ① Title I (제재), ② Title II (이란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회수), ③ Title III (상품, 서비스, 기술의 이란으로의 이전 금지), ④ Title IV (일반조항) 등 4개의 타이틀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나. 제재법안의 주요 내용

#### □ Title I (제재)

- Title I에서는 ① 이란 혁명수비대를 비롯하여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이란 기관과 거래하는 금융기관, ② 이란에 정유를 판매하거나 이란의 국내 정제부문을 지원하거나 이란의 에너지 부문 개발을 돕는 상품, 서비스 또는 노하우를 판매하는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제재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의 3가지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하고 있음.
  - 첫째, 미국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 금지
  - 둘째,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금지
  - 셋째, 미국내 자산거래 금지

- 또한 미국은행의 해외 자회사가 이란 혁명수비대 등과 거래하는 경우 모회사가 민·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.
- 민사상 벌금은 U\$250천 또는 실제 거래금액의 2배이며, 형사상 처벌의 경우 거래당 U\$1백만 벌금 또는 최고 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음.

□ **Title II (이란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회수)**

- Title II는 미국 주·지방정부의 자산이 이란 에너지 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된 경우 주·지방정부가 이러한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.
- Title II에서 명시한 투자회수와 신규 투자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음.
  - 이란 에너지 분야에 대한 U\$20백만 이상 투자, 대 이란 유조선 제공, 원유,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및 유지, 금융기관의 이란 에너지 분야에 대한 U\$20백만 이상 신용 제공 등

□ **Title III (상품, 서비스, 기술의 이란으로의 이전 금지)**

- 이 조항에서는 대량살상무기 (WMD) 확산 또는 테러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상품, 서비스, 기술을 이란으로 재수출, 환적, 이동, 이전하는 정부에 대해 미국국가정보국이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.
-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, 미국 대통령은 해당 위반 국가에 대한 미국기업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음.

□ **Title IV (일반조항)**

- 이 조항에서는 미국의 이란제재법 종료시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  - 이란이 국제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미국의 테러지원국가 지정 명단에서 해제되는 경우

- 이란이 핵·생·화학 무기, 탄도미사일과 그 발사기술을 개발하거나 획득하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경우

### 3. 향후 전망

#### 가. 이란정부의 단시일 내 입장변화 가능성은 낮음

- 이란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제재법안에 대해 저항적인 비난으로 일관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, 미국의 신규 제재 발효로 국내·외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.
- 정유 관련제재가 강화될 경우 휘발유 가격 인상 등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,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
  - 이란은 세계 2위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5위의 원유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유 정제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휘발유 소비량의 40%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
- 계속되는 UN, 미국, EU 등의 제재로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·가스 개발과 정유 사업 등에 필요한 핵심 기자재 공급에 심각한 애로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
- 국제적인 고립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
- 결국, 이란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서방과의 물밑 협상 노력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, 현재의 이란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, 단시간 내 가시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.

## 나. 제재법안 적용과 해석에 관한 논란 지속 가능성

- 그러나 포괄적 이란 제재법안은 제재 위반의 내용 등에 대한 해석과 효과에 있어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며, 미 행정부는 법안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작성하고 있음. 이에 따라 10월 1일경에 WMD와 테러리즘 관련 외국은행에 대한 조치 등 이행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안 적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과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임.
  
- 또한 제재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, 관련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제재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.
  - 기존 사업이라 하더라도 신법을 위반하였다는 정보가 접수될 경우, 미국 대통령은 이를 조사하여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, 기존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법 적용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음.
  
  - 다만 제재법은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사업에 신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지만, 기존사업의 형식이 지속사업(continuing work)이 아닌 분할거래 (separate transactions) 방식인 경우, 신법 발효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.
    - 예를 들어 신 제재법안은 항공기유를 제재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데, 특정 회사가 기존계약에 의거 7월 1일 이후에도 이란항공사에 항공기유를 계속 납품한다면 동회사는 신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.
  
    - 반면에 신법 발효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한 사업이 유조선 건조와 같이 지속사업 형식일 경우, 실제로 유조선을 이란측에 인도하는 시점이 신법 발효 이후가 되더라도 이에 신법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는 없다는 판단임.

#### 다. 신 제재법안 파급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

- 타국 기업·은행들의 동향 등 전반적인 추세를 예의주시하고, 송금과 외환거래 등에 대한 제재가 더욱 심해질 경우에 대비하여 두바이, 중국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- 새로운 이란 제재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, 미 재무부의 데이비드 코헨 (David Cohen) 차관보는 7월 14일 일본의 3대 은행인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, Mizuho Financial Group Inc.,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Inc.를 방문하여 이란은행 및 기업들과의 거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.
- 한편 중국, 러시아 등은 이번 미국의 추가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.

<자료제공 : 이란 주재원>

문의 : 책임조사역 박대원 (☎02-3779-6651)

E-mail : [parkdw@koreaexim.go.kr](mailto:parkdw@koreaexim.go.kr)